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0. 10.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

1. 개정이유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두는 감사(監事)가 실시하는 감사(監査) 기능을 국가과학기술 연구회로 이관하고,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이 감사제도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 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또한, 출연(연)의 연구연속성 및 책임경영 확보와 안정적이고 일관된 R&D 환경조성을 위해 기관장 임기연장(現 3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에 따라, 현행 기관장의 연임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장 연임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감사(監事)제도를 폐지함 (안 제5조, 제8조 삭제 및 제8조의2 개정)

나. 출연(연) 기관장 연임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 평가등급을 현행 ‘최상위 등급’에서 ‘우수등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8조의3 개정)

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함 (안 제12조의2 신설)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의 지위를 가짐
- 2)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단을 둠
- 3)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감사위원장 포함),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이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4)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음
- 5)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6) 감사위원장 께위 시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직무 대행
- 7)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8) 감사위원은 연구회 정관에서 정하는 세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임명
- 9)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함

라. 연구기관 자체감사에 대한 중복감사를 배제 및 금지함 (안 제12조의3 신설)

- 1)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4항 감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부는 이미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감사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제8조(감사의 임명 등)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을 “(연구기관 원장의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원장 또는 감사가”는 “원장이”로 한다.

제8조의3의 조문 “최상위 등급을 받은”을 “우수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사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단을 둔다.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감사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연구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세부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복감사 배제 및 금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4항 감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부는 이미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정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연구기관에 재임 중인 감사(監事)와 그 연구기관의 감사(監査)에 대해서는 제8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u>	<삭 제>
<u>제8조(감사의 임명 등)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u> <u>② 감사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u>	<삭 제>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u>원장 또는 감사</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연구기관 <u>원장</u>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u>원장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 설>

평가기준)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2(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사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단을 둔다.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감사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연구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중복감사 배제 및 금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4항 감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부는 이미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정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연구기관에 재임 중인 감사(監事)와 그 연구기관의 감사(監査)에 대해서는 제8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